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4. 2 선고 2018가합10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12. 17 선고 2020나10799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4. 2 선고 2018가합109 판결

전문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동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이승혁

변론 종결 2020. 3. 18.

판결 선고 2020. 4.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169,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D 공사 E 1공구 F지구사업의 시공사였는데, 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2011. 5.경 충남 F지역 G조성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설하였던 토지를 인근 H둔치에 쌓아 두고 있었다.

나. 피고의 현장소장 I 과 공사차장 J은 공정 변경으로 인하여 위 준설토가 필요 없게되자 2011. 6.말경 당시 E 1공구 사업의 책임감리원이었던 K로부터 준설토 매수를 원하는 원고들을 소개받고, 2011. 10.말경 원고들이 준설토 운송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고들에게 위 준설토 중 61,835㎥(이하 '이 사건 준설토'라 한다)를 1㎥ 당 1,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I, J이 이 사건 준설토를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매도하였음에도, K은 2011. 10.14. 국토관리청 하천국 E 사업팀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준설토를 군산시 L 소재 M 등에 사토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사토장선정 실정보고를 하였으며, 2012. 6. 7.경 '이 사건 준설토를 사토처리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사토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토관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I, J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준설토를 보관하던 중 이를 매도하여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고합5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4노5 판결), 원고들도 이 사건 준설토가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I, J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장물취득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각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5. 15. 선고 2013고정250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노665 판결, 대법원 2015. 12. 22. 선고2015도17296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대한민국은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896호로 I, J, K, 원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I, J, K, 원고들은 공동하여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61,385,000원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107896 판결), 위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준설토를 사토처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직원들인 I, J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준설토를 매각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준설토 61,835m'를 군산시 L 일대 M(사토장 1), 익산시 N 일대 약 3000평(사토장 2), 익산시 O 일대 약 3,000평(사토장 3)에 운반·사토처리를 하였다.

나. 피고 직원들인 I, J의 행위는 곧바로 피고의 행위와 동일시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준설토를 운반, 사토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준설토의 운반·사토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부담한 위 사토처리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토처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 600,169,259원[= 위사토장 1에 소요된 비용 126,352,908원 + 위 사토장 2에 소요된 비용 336,863,326원 + 위 사토장 3에 소요된 비용 136,953,025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한다.

3.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민사사건에서의 각 판결문(갑 제1, 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I 과 J 개인으로 보아야 하고, I, J이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롭게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타인권리매매의 경우 그 매매계약 자체는 일응 유효하므로,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③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으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는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준설토에 관한 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은 I, J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급부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설령 제3자인 피고가 이로 인하여 사토처리비용을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이인민, 판사 이국진

1) 위 사건의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액 61,385,000원(= 이 사건 준설토 물량 61,835ml × 1m³ 당매매가액 1,000원)으로 산정되었다.

2) 다만, 원고들은 2019. 12. 4.자 준비서면에서 부당이득금 청구금액은 600,169,259원으로 유지하면서, 원고들의 손해액을 616,271,332원(= 1) 원고들이 직접 공사한 H지구 준설토 작업비용 304,588,372원 + 2 원고들이 유한회사 P로부터 양도받은 사토처리 공사대금 216,682,960원 + 3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고 납부한 벌금액 20,000,000원 + 4 원고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대한민국에 지급한 75,000,000원)으로 특정한바 있다.